



화학공학혁신리더 교육연구단 운영규정

2021.1.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에 위임된 사항으로 미래인재 양성사업 응용과학분야 화학공학혁신리더 교육연구단의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기간) 본 사업은 7년간 추진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교육연구단구성) 본 교육연구단은 효율적인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① 운영위원회 : 8인 이상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위주로 연구단의 사업계획 도출 및 추진, 성과분석, 사업단의 예결산 승인 등 실제적 운영을 담당한다.
- ② 외부평가위원회 : 3~5인의 국내외 학계 및 산업체 임원 등의 인사로 연구단의 사업평가, 자문 등을 담당한다.

제4조(평가) 본 교육연구단은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연 1회 이상 연구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참여교수)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이하 참여교수라고 한다.)는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되어 해당 대학에서 근무기간을 전일제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참여교수는 사업신청 당시 대학원과정의 학과에 전임으로 발령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에 참여

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교수

2. 1년 이내 국내외 기관 파견,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 (6개월 이상 1년 이내) 등으로 국내에 없는 교수

3. 교육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연구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교수

③ 교육연구단은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 시를 기준으로 참여교수 규모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다.

④ 교육연구단이 제3항에 따라 참여교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 9조에서 정한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변경 사유와 해당교수 연구업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참여교수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참여교수 교체 시 전임 참여교수 지도의 참여대학원생은 신규 참여교수 또는 사업단내 다른 참여교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⑥ 참여교수 교체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으며, 참여교수 자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1.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2. 연구년 또는 안식년, 6개월 이상의 국외 기관 파견, 해외 장기출장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⑦ 제 1항에 따른 참여교수 추가 및 교체 시 선발기준은 연구역량을 우선시 평가하되 연구역량 평가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으며, 당해 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참여교수 1인당 평균 연구실적이 최근 3년간 4편 이상이어야 한다.

2. 그 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신청 학과(부)에 소속되어 전일제로 등록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②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해당 대학원에서 매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위해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 참여대학원생 참여기간 중 교육연구단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창업을 한 사람 (지원대학원생 선발 불가)
3.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 임용을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

⑤ 지도교수가 2명 이상일 경우, 지도교수 전원이 사업 참여교수인 경우에 한하여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 지도교수 중 일부가 타 학과 소속인 경우는 해당 타 학과 교수를 제외한 지도교수 전원의 사업 참여 조건을 적용한다.

⑥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 받는 학생을 지원대학원생으로 하며, 참여대학원생 수의 70% 이내에서 선발 할 수 있다

⑦ 지원대학원생은 매 학기 초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선정한다.

⑧ 지원대학원생의 수 및 지원 금액은 당해년도 예산 범위 및 상위규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본 교육연구단 지원대학원생 선발 지침에 의한 평가를 거쳐 운영위원회 및 교육 연구단장의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70만원 이상 ~ 180만원 미만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130만원 ~ 250만원 미만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월 100만원 ~ 250만원 미만

⑨ 지원대학원생은 참여교수 지도학생으로 신청 학과 대학원에서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자로 전년도 학점 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함.

⑩ 지원대학원생은 학기별로 연구장학금 신청을 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제8항의 연구장학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취업, 졸업, 군사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도교수의 신청이 있을 시 학기 내 월별 장학금 지급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2020학년도 2학기 연구장학금 지급부터 적용한다).

제7조(신진연구인력)

① 본 교육연구단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

리더연구원 (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급여, 법정보험, 인센티브 등 근로 조건, 신진연구인력의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신진연구인력을 신규임용 및 재임용 시에는 본 교육연구단 신진연구인력 운영 세부지침에 의해 신규임용 및 재임용을 진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박사후과정생의 채용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박사후과정생에게는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 월 지급 기준액(300만원)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의 월 급여액은 월 277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제2호의 사업비 지원을 받는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 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교수의 채용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사업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교수에게는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 월 지급 기준액(300만원)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의 월 급여액은 월 277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

4. 제3호의 사업비 지원을 받는 계약교수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리더연구원 채용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더연구원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하며, 반드시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2명이상의 공동연구(복수멘토)를 수행한다.

2. 리더연구원은 소속 사업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리더연구원에게는 월 5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 월 지급 기준액(500만원)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의 월 급여액은 월 461.6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

⑦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해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⑧ 신진연구인력은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외 강의를 위해 외부대학과 체결한 신진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이중 소속을 허용한다.

⑨ 박사후과정생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학교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⑩ 계약교수 및 리더연구원은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를 할 수 있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서 의미하는 강의는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한다. 단,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제8조(해외학자)

① 교육연구단장은 연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③ 해외학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제9조(사업비 집행)

① 『4단계 BK21사업 예산편성 집행기준』에 준하여 집행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② 국제협력경비 등 항목별 세부 집행기준은 항목별 세부지침에 따른다.

③ 교수 성과급 경비의 경우 각 참여교수의 BK Point를 산정한 상대 평가를 실시하여 A,B,C 등급으로 산정하여, 등급별 성과급 금액을 금년도 예산으로 차등 지원하도록 한다.

제10조(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예산의 효율적 진행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및 발생이자를 더한 금액의 15%이내에서 이월이 가능

하며 이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 사업비 배부 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에 한하여 이월 가능 범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홈페이지 운영) 교육연구단의 장은 정보공개, 사업성과 관리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 202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화학공학혁신리더 교육연구단 지원대학원생 선발지침

2021.1.6 제정

제 1조(목적) 본 지침은 4단계 BK21사업 “화학공학혁신리더교육연구단” 소속 지원대학원생 선발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지원대상)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운영위원회 및 교육연구단장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 3조(평가기준) 운영위원회에서는 아래 표에 기재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1. 운영위원회는 최대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 학생을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평가 기준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업적이 인정되거나, 예외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대학원생 평가 기준 표>

평가항목	세부사항			실적 기간
학부성적 (석사1학기)	학부성적 3.0 (4.3기준) 이상일 경우 50점 만점			학부성적 전체성적
대학원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50점 만점			직전학기
논문실적	SCI(E) 논문 (published만 인정)	주저자 기타저자	한 편당 100점 한 편당 50점	직전학기 직전학기
논문 가산점 (최대100점)	JCR IF지수 기준: 논문 한 편당 50점 가산점 (중복 적용 불가) 1) 전체 SCI(E)논문 중 상위 10%이내 2) 각 분야 SCI(E)논문 중 상위 10%이내			
특허	국 외	출원 등록	한 건당 100점 한 건당 300점	직전학기
	국 내	출원 등록	한 건당 50점 한 건당 150점	직전학기
학술발표* (최대 100점)	국 외	30점(Oral) 20점(Poster)		직전학기
	국 내	15점(Oral) 10점(Poster)		
기업체 인턴	국 내	50점/1 개월		직전학기
	국 외	100점/1 개월		
수상실적	한 건당 50점 (사업단 내부 수상 포함)			직전학기
BK21플러스 참여율 점수 (최대 100점)	1) 한 건 당 5~10점 (행사에 따라 참여점수 변경가능) 2) BK21플러스 단기 강좌 및 특강 수강 시 강의 당 15점 가산점 부여 3) 대학원생 과대표 참여율에 따라 최대 100점			직전학기

화학공학혁신리더 교육연구단 신진연구인력 운영 세부지침

2021.1.6 제정

제 1조(목적) 본 지침은 4단계 BK21사업 “화학공학혁신리더교육연구단” 소속 신진연구인력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지원대상) 사업단 소속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박사후 과정생, 계약교수(연구교수), 리더연구원으로 4단계 BK21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력으로써 운영위원회 및 교육연구단장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 3조(평가기준) 운영위원회에서는 신진연구인력 신규임용 및 재임용 평가 시 아래 표에 기재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평가 기준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업적이 인정되거나, 예외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신진연구인력 선발 평가 기준: 2020.9.16. 제정>

구분	리더연구원 (신설)	박사 후 연구원	연구교수 (계약교수)	비고
조건 (&)	박사 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1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 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1년 이상	
	2명 이상의 공동 연구 (복수 멘토)	-	-	
	인건비 일부 지원 받는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지원	-	-	
계약 기간	3년	1년	1년 ~ 2년 이내	1명당 최대 4년까지 임용 가능
월급여	500만원 이상/월 (연 6,000만원 이상) (단, BK사업비: 300만원/월, BK사업이외 연구과제: 차액부담)	300만원/월 (연 3,600만원)	300만원/월 (연 3,600만원)	퇴직금 포함
평가 요건	주저자로 SCI 분야별 상위 5% 이내 1편, 10%이내 1편 포함 6편 이상	주저자로 SCI 분야별 상위 10% 이내 1편 포함 3편 또는 Q1 해당 논문 3편	주저자로 SCI 분야별 상위 10% 이내 1편 포함 6편 또는 Q1 해당 논문 6편	
	재임용	임용기간 1년동안 SCI 분야별 상위 10% 이내 주저자 논문 2편 이상 또는 탁월한 Top tier 급 논문 1편	임용기간 1년동안 SCI 분야별 상위 10% 이내 주저자 논문 1편 이상 (첫 재임용 평가에 한해 Q1논문 2편도 인정)	Accepted 논문 인정함.
지원 내용	교수별 지원내역에 포함되지 않음	교수별 48개월까지 지원		

국제협력경비 지원 운영 세부 지침

1. 단기 해외연수 참가 지원: 논문발표자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선발 대상: 학술대회 논문발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함. (발표 원칙)
- ②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가 주관하며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4개국 이상 참여,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이상)을 충족하는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논문발표자 및 참여대학원생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신진연구인력,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의 학술대회 참석을 지원한다.
- ③ 지원금액은 항공료의 실제 소요 금액 및 체제비로, 항공료는 영수증 청구 금액 만큼, 체제비는 본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출서류

가. 신청서류

- 국제학술대회 참가 신청서 1부 (교육연구단 양식 활용)
 - 출장신청서 작성시 재원부분은 교육연구단에 문의, 상세일정 기재
 - 예산 산출 기준 : 대학여비규정 기준
- 항공료 신청 시
 - 반드시 BK사업 연구비 카드 결재 (개인카드 사용 불가능) 또는 여행사(항공사)에 계좌이체
 - 항공티켓영수증 및 e-ticket
- 학회등록비 신청 시
 - 반드시 BK사업 연구비 카드로 결재
 - On-line으로 참가비 결재(연구비카드 결재)가 불가능한 경우 : 사유서를 첨부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현장등록비는 연수자 개별통장으로 계좌이체
- 발표논문(초록) 사본
- 학회관련(학회명, 일시, 장소 명시, 학회등록비 명시) 자료

나. 사후제출 서류

- 해외연수결과보고서 1부 (교육연구단 양식 활용)
- 여권사본(사진 나온 부분, 출입국 직인이 날인된 부분): 연수 후 제출, 본인 출장기간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 항공 텁승권 원본 (보딩티켓) 1부
- 학회 프로그램 책자 표지 및 본인 논문 게재 부분 1부
- 학회 등록비 영수증 1부

2. 장기 해외연수 참가 지원

- ① 선발 대상: 박사논문 준비생을 우선적으로 함 (QE 통과 학생)
- ② 지원기준: 왕복항공료를 포함하여 북미, 유럽(오세아니아 포함) 및 일본지역 연수의 경우 2,000USD/월 지원하며, 아시아지역 연수의 경우 1,000USD/월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지원기간 : 15일 이상 1년 6개월 미만
- ④ 등록금 문제는 관련 부서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 ⑤ 제출서류
 - 국제협력프로그램 참가 지원서
 - 해외연수프로그램 계획서 (해외연수 소요경비 내역 포함)
 - BK21 장기 해외연수 신청서
 - 본인이 작성하여 행정부서확인과 지도교수, 주임교수 서명 필수
 - 출장신청서 작성
 - 출장신청서 작성시 재원부분은 교육연구단에 문의
 - 체제비 산출기준 : 본 대학 여비 규정 적용
 - 성적증명서 1부
 - 장기해외연수 Program 협정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
 - 신학기(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항공료 영수증 (반드시 BK사업 연구비 카드 결재)
 - 보고서 : 연수 후 제출
 - 여권사본 (사진부분, 출입국도장 찍힌 부분) : 연수 후 제출, 본인 출장기간과 맞는지 확인, 사정에 의해 당초 신청일에 비해 장기연수기간이 짧아지게 되면 줄어든 해당일 만큼 계산하여 장기연수 경비를 반납해야 함

3. 해외 석학 지원

- ① 지원대상: 벤치마킹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해외석학 및 우수 교수 초빙
- ② 장기(6개월 이내) 초빙은 학과의 대학원 교과목 강의 또는 대학원생의 연구지도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 세미나를 개최시에는 대학 자체규정인 전문가 활용지침 및 초청세미나 지원 세부지침에 따라서 지원한다.
- ③ 단기(1개월 이내) 초빙은 집중적으로 학생을 지도(세미나, 특강)하거나 공동 연구가 필요한 경우 추진한다
- ④ 지원기준 : 300만원범위 이내
- ⑤ 지원항목 : 항공료, 자문료, 숙박비, 식비
- ⑥ 교육연구단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인당 500만원 기준 지원. 단, 교육 연구단에 [III.의견서] 제출

⑦ 제출서류

- 해외교수 초청 계획서
- 초청 활용계획서
- 초청교수 CV
- 세미나 제목 및 초록
- 세미나 영수증, 항공 구매영수증 (해당 시)
- 여권 사본 및 계좌 정보
- 강의 진행 시 강의 syllabus

기타사업 운영 경비 집행 세부 지침

1. 초청 세미나

- ① 지원 대상: 4단계 BK21사업 참여교수가 초청하는 인사
- ② 세부 산출기준 : 아래 대학 전문가 활용 기준에 준하여 지원하되, 세미나 및 강의료 기준은 교육연구단 세부 기준에 따른다.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액
자문료(강사료) (1시간 기준)	S급	기관장, 저명인사	1,000,000원 이내
	1호	전임교원 이상, 선임급 연구원 이상, 전문가 경력 10년 이상	500,000원 이내
	2호	S급, 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250,000원 이내
원고료	A4용지 1매(200자 원고지 4매 기준)		20,000원 이하
위원 수당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단(팀) 내부 운영규정상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단, 내부 위원은 지급하지 않음)		500,000/일 이하

※국외 전문가는 국내 전문가의 2배 이내에서 지급 가능

<교육연구단 전문가 활용 세부 기준: 2019-10차 운영위원회>

- 1) 해외석학급: 500,000원/시간
 - 2) 그 외 해외 학자: 300,000원/시간
 - 3) 국내연사: 300,000원/시간
 - 4) 1학점 강의료 기준: 2,400,000원 한도 내
- ③ 제출 서류 : 전문가초청 활용 계획서 [양식A-1]
 - ④ 회의비: 3만원/인을 기준으로 하되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2. 논문 게제료

- ① 지원 대상: 국제 Journal에 게재하는 논문의 논문게재비용을 지원한다.
- ② 지원기준: 국제 Journal에 게재시에는 참여교수 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BK21사업으로 지원받음을 사사하여야 하며, 타 과제와 중복표기시 BK21 사업 교육연구단 교육, 연구 내용과의 연관내용을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사표기는 사업단명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교육연구단명: Education Program for Innovative Chemical Engineering Leaders)

예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K21 FOUR Program for Education Program for Innovative Chemical Engineering Leaders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P).

3. 참여교수 및 참여인원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 ① 지원 기준 : 각 참여교수의 전년도 BK point를 산정한 상대 평가를 실시하여 A, B, C등급으로 차등 지원하도록 운영.
- ② 성과급 경비의 경우 참여교수의 사업연도 BK포인트
- 주저자인 SCI 논문당 1점
 - 주저자 상위 10% 논문당 1점 추가
 - 국내특허 등록 당 1점, 국외특허 등록 당 2점
 - 연구과제 수주 5000만원 당 1점, 입금기준
 - 기술이전 1000만원 당 1점, 입금기준
 - 사업단장은 BK사업 특별 기여도 0~3점을 산정할 수 있다.
- 상기의 BK포인트를 합산하여 A, B, C등급으로 등급별 인센티브 지원금액을 차등 지원하도록 운영한다.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액
참여교수 인센티브	A 등급	4,800,000원
	B 등급	3,200,000원
	C 등급	2,000,000원

- ③ 사업전담 행정직원에게도 사업성과 또는 시간 외 근무가 발생시에는 월급여 금액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4. 학술대회 공동개최 지원

- ① 지원 기준: 4단계 BK21사업 참여교수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로써, 기본적으로 100만원/건으로 지원하기로 하며 단, 신청교수가 위원장 등 고려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한도 300만원).

5.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및 올해의 화학공학 대학원상 (매년 시상)

- ① 필요성 및 목적: 대학원생들의 우수 논문 발표를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함
- ② 대상자
- 우수논문상: 화학공학과 대학원생 중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
 - 올해의 화학공학 대학원생: 화학공학과 대학원 박사학위 수여자 (매 학년도에 맞추어 8월, 2월 졸업대상자로 매년 2월에 선정 함)
- ③ 선정 인원 및 포상금: 해당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BK21사업 운영위원회를 거쳐 선정함.
- ④ 선정기준: 매년 대상자 안내 및 신청서를 접수 받아,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BK21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함 (신청서: 붙임 양식)
- ※ 우수논문상은 1년 단위로 평가하며, 동일 년도 내에서는 중복수여 불가능.
올해의 화학공학 대학원상은 재학기간 전체의 연구실적을 평가 함



화학공학혁신리더 교육연구단 우수논문상 신청서

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과정/학년:

연구실적

- 주저자 국제학술지 발표논문 리스트 (대상기간: 1년 / 2014.09.01~2015.08.31)

논문명	학술지명	게재 년도	IF	해당분야 상위 5% 여부 (O/X 표기)

※ 발표 논문 PDF 파일 첨부

※ 기 수상한 논문으로 신청할 경우 (예, 공동 1저자) 반드시 청원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주저자 대표논문 (1편)

- 논문명:
- 연구내용:

- 우수성 (가치 및 의의, 기대효과 포함) :

주요 수상경력 (대상기간: 1년단위 / 2014.09.01~2015.08.31)

수상명	수상일	수여기관	수상사유



화학공학혁신리더 교육연구단 올해의 화학공학 대학원상 신청서

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과정/학년:

연구실적

- 주저자 국제학술지 발표논문 리스트 (대상기간: 대학원 재학기간)

논문명	학술지명	게재 년도	IF	해당분야 상위 5% 여부 (O/X 표기)

※ 발표 논문 PDF 파일 첨부

※ 기 수상한 논문으로 신청할 경우 (예, 공동 1저자) 반드시 청원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주저자 대표논문 (1편) /

- 논문명:
- 연구내용:

- 우수성 (가치 및 의의) :

- 기대효과:

주요 수상경력 (대상기간: 대학원 재학기간)

수상명	수상일	수여기관	수상사유